

11. 인도신고

01 | 적용대상과 법적근거

신고 대상	「생화학무기법」제11조제2항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생물작용제등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 - 신고서 제출처 : 산업통상부 - 신고서 수리기관: 산업통상부장관
대상 물질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인도하려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02 | 신고 의무 사항

무엇을?	수출대상국, 인도 장소 등
언제?	인도 전(관세청 “수출신고 수리” 이전) 신고 ※ 관세청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당일 제외
어디에?	산업통상부장관
어떻게?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생물작용제등 인도 신고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접수)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접수)

11. 인도신고

03 | 신고 절차

단계	검토 사항	비 고
대상 여부 확인	인도신고하려는 물질이 수입허가를 받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에 해당하는지 확인	- 법 제11조제2항 - 시행령 제8조
기한 산정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	법 제11조제2항
서류 준비	- 생물작용제등 인도신고서 - 첨부서류(각1부) - 수출허가증 -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물품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생물작용제등 인도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u>온라인</u> -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 기관 계정 필요 - 연말 기준 보유현황 보고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u>오프라인</u> - 담당 부서로 우편·방문 접수	산업통상부
수리 후 의무	<u>정기 보고</u> - 매년 2월 말일까지 직전 연말 기준 보유현황을 보고	시행령 제9조의2
	<u>변동 관리</u> - 사용·양도·폐기 등 보유량 변동은 정기 보고 시 반영하고, 관련 별도 신고·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름	법 제7조, 제9조, 제10조
	<u>현장 검사</u> - 정기/수시검사 대상	법 제18조의2

※ 법: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04 | 신고 방법(서식 작성 요령)

4.1 (온라인)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1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https://batims.or.kr/login>

2 “인도(인수)신고 신청하기” 클릭

11. 인도신고

3 신고서 작성

① 담당자 정보 - 자동 생성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biocompany님 | 공지사항 | 내 정보 관리 | 로그아웃

최근신고 수입허가관리 보유신고관리 제조신고관리 폐기(양도)신고관리 정기(수시)검사 자가점검

인도(인수)신고

신고서 작성 신고서 업로드 접수대기 검토중 신고 완료

• 담당자 정보

아이디	biocompany		
성명	김철수		
직위	과장		
휴대전화	010-1234-5678	전화	031-123-4567
이메일	000@0000.co.kr	팩스	
소속기관	바이오기업	소속부서	관리팀
조직구분	기업	담당자구분	관리책임자

② 신고인 정보 - 자동 생성

•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

• 신고인 정보

상호(명칭)	바이오기업
성명(대표자)	홍길동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	(13488)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1층 바이오기업
전화번호	031-123-4567

③ 신고 종류 - “인도” 체크, 물질명칭 - 해당 물질명을 선택

신고내용

수입(변경)허가번호

수입허가번호

수입(변경)허가번호 조회

수입(변경)허가 완료된 허가서의 허가번호. 인수신고시에만 입력합니다.

신고 종류

☒ 인도 ☐ 인수

물질명칭

물질명을 선택해 주세요.

인체,인수병원균

_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_생물작용제 및 독소 목록물질 아님 (Not in the list)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South American h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니파 바이러스 (Nipah virus)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두창 바이러스 (Variol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 (Lassa fever virus)

리프트게곡열 바이러스 (Rift Valley fever virus)

마버그 바이러스 (Marburg virus)

특성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품목분류번호(HSK No.)

수출입 대상국

수출입 대상자

수량

④ 특성 - 다음 중 선택 입력 “인체 · 인수 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품목분류번호, 수출 대상국, 수출 대상자, 수량, 인도장소, 인도일 - 해당 정보 기입

신고내용

수입(변경)허가번호

수입허가번호

수입(변경)허가번호 조회

수입(변경)허가 완료된 허가서의 허가번호. 인수신고시에만 입력합니다.

신고 종류

☒ 인도 ☐ 인수

물질명칭

보툴리눔균 (Clostridium botulinum)

×

▼

특성

인체 · 인수 병원균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품목분류번호(HSK No.)

3002.49.2000

3002.49.2000

▼

수출입 대상국

미국

수출입 대상자

ABC Company

수량

10 vial(1.5mℓ/vial)

직접입력

▼

⊕

⊖

인도 · 인수 장소

인천국제공항

인도 · 인수일

2025.12.31

11. 인도신고

⑤ 첨부서류 - 첨부파일 업로드

첨부서류	1. 수출입허가증 사본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수출허가증.pdf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선하증권.pdf
신고일	2025.12.01
신고인	홍길동

※ 첨부서류의 상세내용은 “4.3 첨부서류”에서 확인하고 작성

⑥ (필요시) 추가 입력 사항

· 추가 입력 사항	
메모	
기타 첨부자료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⑦ 신고서 생성 클릭

신고서 생성

취소

4 신고서 업로드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biocompany님 | 공지사항 | 내 정보 관리 | 로그아웃

최근신고

수입허가관리

보유신고관리

제조신고관리

폐기(양도)신고관리

정기(수시)검사

자가점검

인도(인수)신고 - 바이오기업 바이오기업

신고서 작성

신고서 업로드

접수대기

검토중

신고 완료

• 직인 날인한 인도(인수)신고서 업로드

Step 01

인도(인수)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①

생물작용제용 인도(인수)신고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후 직인 날인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Step 02

직인 날인 인도(인수)신고서 업로드

②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바이오기업-인도(인수)신고서.pdf

③

접수요청

인도(인수)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이미지 파일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해 주세요.

- ① 신고서 생성 후 파일을 다운로드 후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스캔
- ②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
- ③ 접수요청 클릭

※ 수정이 필요한 한 경우에는 “신고서 업로드”의 하단에 수정 클릭

11. 인도신고

4.2 (오프라인) 산업통상부 방문접수

● 생물작용제등 인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에 방문접수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2.4.13>

[] 1종 화학물질 [V]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바이오기업		
	성명(대표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1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삼평동) 1층 바이오기업	전화번호 000 - 000 - 0000	
신고내용	[V] 인도 [] 인수		
	물질 명칭 보툴리눔균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품목분류번호(HSK No.) 3002.49.2000		
	수출입 대상국 미국	수출입 대상자 ABC Company	
	수량 10 vial(1.5ml/vial)	인도·인수 장소 인천국제공항	
	인도·인수일 0000 년 00 월 00 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출입허가증 사본 1부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 신고인만 적습니다.

4.3 첨부서류

※ 인도신고서의 첨부서류	
수출허가증	•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서 ▶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정식 서식일 것
선하증권 (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물품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통 요건) • 인도신고서의 물질명·수량·수출국가 등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인도일은 허가된 수출기간 이내여야 함
	•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 접수 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
	• 수출물품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AWB) ▶ 운반업체 송장 또는 운송확인서

4.4 제출전 (자가) 점검표

● 기본 정보·적용 대상 확인

☐	• 이번 건이 '생물작용제등 인도신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	• 인도하고자 하는 생물작용제등이 수출허가를 받은 물질인지를 확인했다.
☐	• 국내 공항, 항만에 물품 인도 예상일을 확인했다.
☐	• 생물작용제등 '인도 전(관세청 “수출신고 수리” 이전)’에 '인도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 ※ 관세청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당일 제외

11. 인도신고

● 서식 작성 사항(필수 기재)

☐	• 신청인(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의 기본정보를 정확히 기재했다.
☐	• 신고내용에서 '인도'에 해당함을 표기하였다.
☐	• '물질 명칭'과 '품목분류번호(HSK No.)'을 명확히 기재했다.
☐	• '수출 대상국'과 '수출 대상자'를 명확히 기재했다.
☐	• '수량'에 단위를 명확히 적었는가? (예: mg, mL, vial 등)
☐	• '인도장소'(공항, 항만)를 명확히 기재했다.
☐	• 서명/직인, 제출일자, 연도 누락이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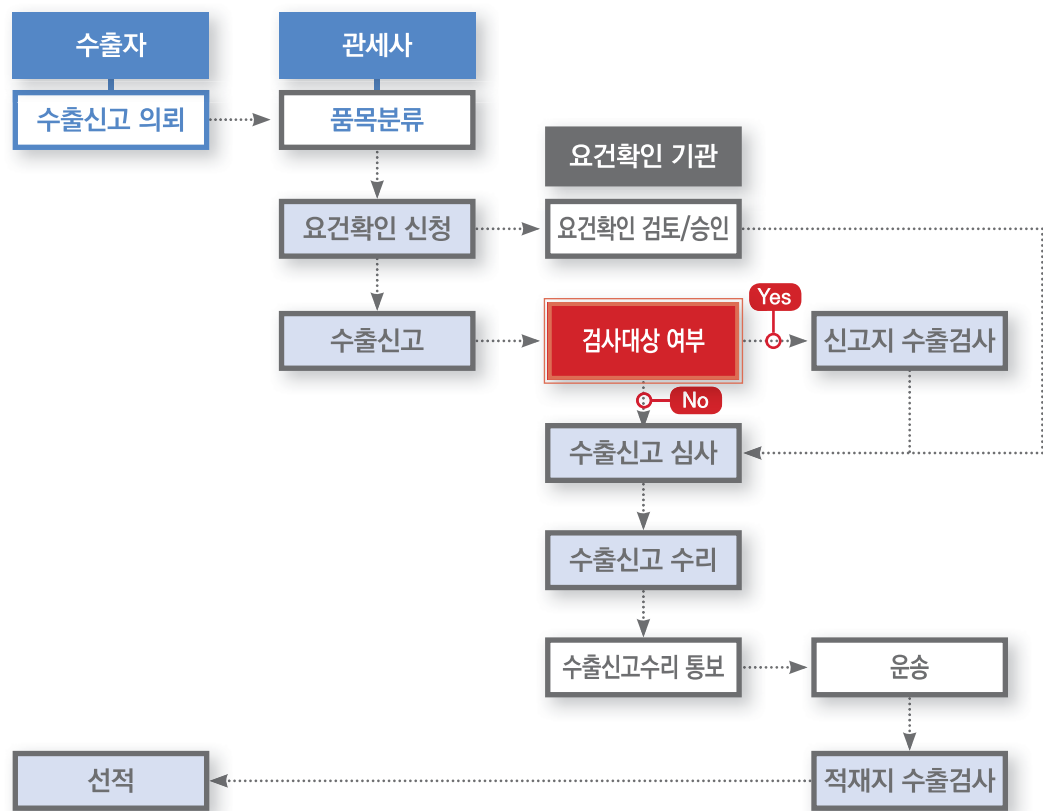
● 첨부서류 준비

☐	• '수출허가증'을 첨부했다. ▶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수입허가서'
☐	•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물품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했다.
☐	• 첨부서류와 인도신고서의 물질명·수량·수출국가 등과 일치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	• 첨부서류의 인도일이 허가된 수출기간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	• 제출 형식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인적사항(성명·번호·주소)의 일치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4.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인도하려는 경우, ‘인도 전(관세청 “수출신고 수리” 이전)’ 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관세청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당일 제외
Q2	인도신고 후 인도 일정 변경이 생기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산업통상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존 인도신고를 철회하는 공문을 발송 후 다시 인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물질 일부만 먼저 인도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부분 인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각 인도때마다 인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수출허가서와 배송서류(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물품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수량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출허가받은 양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변경)허가 위반 이 됩니다. 수출허가받은 양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Q5	인도신고와 ‘수출신고’는 다른 것인가요?
A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수출신고’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으로 관세청 소관이며, ‘인도신고’는 「생화학무기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생물작용제등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인도신고’는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합니다.

11. 인도신고



[수출통관 절차도]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

05 | 유의사항(법 위반 시 제재)

「생화학무기법」 제11조제2항 ‘인도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될 처벌 규정

5.1. 위반 사례

- 사전 인도신고 위반(법 제11조)

미신고	
사례	• 수출허가는 받았으나 인도신고 없이 물질을 해외로 발송한 경우
근거	법 제11조제2항은 생물작용제등을 인도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인도 후 사후적으로 신고	
사례	• 생물작용제등을 인도 후 소급 신고
근거	법 제11조제2항은 생물작용제등을 인도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 거짓 신고(법 제28조)

거짓 신고	
사례	• 물질 명칭·수량·수출국·수출대상자·인도일·인도장소 등을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 ▶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물품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와 실제 인도 정보가 불일치
근거	법 제28조제4호의 거짓신고에 해당

5.2 처벌 규정

인도신고 누락	
행위	사전 인도신고 없이 생물작용제등을 인도
조항	법 제11조제2항
벌칙	• 법 제28조제4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신고 경우	
행위	‘생물작용제등 인도신고서’의 허위 기재
조항	법 제11조제2항
벌칙	• 법 제28조제4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등)에 대한 책임	
조항	법 제29조
벌칙	사업(기관) 명의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임직원)와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벌금형 등 처벌될 수 있음. ※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는 예외

11. 인도신고

06 | 생물작용제등 인도신고 (자가) 점검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생물작용제등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

☐	• 생물작용제등 인도 전에 '수출허가'를 받고 '인도신고서'를 제출했다.
☐	• '인도신고서'의 물질 명칭·품목분류번호, 수량 등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한다.
☐	• 첨부서류의 인도 날짜가 허가된 수출기간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	• '인도신고' 신청 내용이 '수출허가서 사본'과 '수출물품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일치한다.
☐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 또는 누락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	• 정기/수시 검사 대비 보안관리 · 장부 비치 등을 유지하고 있다.

07 | 「생화학무기법」 법령

「생화학무기법」

[법률 제21065]

제11조(수출규제)

- ①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引導)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려면 수출 목적과 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 ① 허가제조사, 신고제조사와 제13조·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4.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인도신고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 신고)

-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보유량
 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인수량 및 인도자·인수자명
 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국가별 수출입량
 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2.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제8조(수출입물품 인도·인수 신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허가증 사본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인수신고



12. 인수신고

01 | 적용대상과 법적근거

신고 대상	「생화학무기법」제12조제2항에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생물작용제등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 - 신고서 제출처 : 산업통상부 - 신고서 수리기관: 산업통상부장관
대상 물질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인수하려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02 | 신고 의무 사항

무엇을?	수입대상국, 인수 장소 등
언제?	인수 전(관세청 “수입신고 수리” 이전) 신고 ※ 관세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당일 제외
어디에?	산업통상부장관
어떻게?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생물작용제등 인수 신고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접수)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접수)

12. 인수신고

03 | 신고 절차

단계	검토 사항	비 고
대상 여부 확인	• 인수신고하려는 물질이 수입허가를 받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에 해당하는지 확인	• 법 제12조제2항 • 시행령 제8조
기한 산정	•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	• 법 제12조제2항
서류 준비	• 생물작용제등 인수신고서 • 첨부서류(각1부) 1. 수입허가증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입물품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생물작용제등 인수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u>온라인</u> –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 기관 계정 필요 • 연말 기준 보유현황 보고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또는 • <u>오프라인</u> – 담당 부서로 우편·방문 접수	• 산업통상부
수리 후 의무	• <u>보유신고</u> – 보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보유신고	• 법 제13조의2
	• <u>정기 보고</u> – 매년 2월 말일까지 직전 연말 기준 보유현황을 보고	• 시행령 제9조의2
	• <u>변동 관리</u> – 사용·양도·폐기 등 보유량 변동은 정기 보고 시 반영하고, 관련 별도 신고·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름	• 법 제7조, 제9조, 제10조
	• <u>현장 검사</u> – 정기/수시검사 대상	• 법 제18조의2

※ 법: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04 | 신고 방법(서식 작성 요령)

4.1 (온라인)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1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https://batims.or.kr/login>

2 “인도(인수)신고 신청하기” 클릭

12. 인수신고

3 신고서 작성

① 담당자 정보 – 자동 생성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biocompany님 | 공지사항 | 내 정보 관리 | 로그아웃

최근신고 수입허가관리 보유신고관리 제조신고관리 폐기(양도)신고관리 정기(수시)검사 자가점검

인도(인수)신고

신고서 작성 신고서 업로드 접수대기 검토중 신고 완료

• 담당자 정보

아이디	biocompany		
성명	김철수		
직위	과장		
휴대전화	010-1234-5678	전화	031-123-4567
이메일	000@0000.co.kr	팩스	
소속기관	바이오기업	소속부서	관리팀
조직구분	기업	담당자구분	관리책임자

② 신고인 정보 – 자동 생성

•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

• 신고인 정보

상호(명칭)	바이오기업
성명(대표자)	홍길동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	(13488)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1층 바이오기업
전화번호	031-123-4567

③ 수입(변경)허가번호 조회 - 체크, 신고 종류 - “인수” 체크

신고내용

수입(변경)허가번호	수입허가번호	수입(변경)허가번호 조회	수입(변경)허가 완료된 허가서의 허가번호. 인수신고시에만 입력합니다.
신고 종류	☐ 인도 ☒ 인수		
물질명칭	물질명을 선택해 주세요.		
특성	특성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품목분류번호(HSK No.)	품목분류번호(HSK No.)		
수출입 대상국	수출입 대상국		
수출입 대상자	수출입 대상자		
수량	수량	단위	
인도 · 인수 장소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인도 · 인수 장소		
인도 · 인수일	인도 · 인수일은 세관 통관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 물질명칭 - 해당 물질명을 선택

신고내용

수입(변경)허가번호	00000	수입(변경)허가번호 조회	수입(변경)허가 완료된 허가서의 허가번호. 인수신고시에만 입력합니다.
신고 종류	☐ 인도 ☒ 인수		
물질명칭	물질명을 선택해 주세요.		
특성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인체,인수병원균 _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_생물작용제 및 독소 목록물질 아님 (Not in the list)		
품목분류번호(HSK No.)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수출입 대상국	니파 바이러스 (Nipah virus)		
수출입 대상자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수량	두창 바이러스 (Variol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 (Lassa fever virus)		
	리프트밸리열 바이러스 (Rift Valley fever virus)		
	마버그 바이러스 (Marburg virus)		
인도 · 인수 장소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인도 · 인수 장소		
인도 · 인수일	인도 · 인수일은 세관 통관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12. 인수신고

- ⑤ 특성 - 다음 중 선택 입력 “인체·인수 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품목분류번호, 수입 대상국, 수입 대상자, 수량, 인수장소, 인수일 - 해당 정보 기입

• 신고내용

수입(변경)허가번호	00000	수입(변경)허가번호 조회	수입(변경)허가 완료된 허가서의 허가번호. 인수신고시에만 입력합니다.
신고 종류	☐ 인도 ☒ 인수		
물질명칭	보툴리눔균 (Clostridium botulinum) × ▾		
특성	인체·인수 병원균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품목분류번호(HSK No.)	3002.49.2000 ▾ 3002.49.2000		
수출입 대상국	미국		
수출입 대상자	ABC Company		
수량	10 vial(1.5mL/vial)	직접입력 ▾	③ ④
인도·인수 장소	인천국제공항		
인도·인수일	2025.12.31		

- ⑥ 첨부서류 - 첨부파일 업로드

첨부서류	1. 수출입허가증 사본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수입허가증.pdf 📎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선하증권.pdf 📎
신고일	2025.12.01
신고인	홍길동

※ 첨부서류의 상세내용은 “4.3 첨부서류”에서 확인하고 작성

⑦ (필요시) 추가 입력 사항

• 추가 입력 사항

메모

기타 첨부자료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⑧ 신고서 생성 클릭

신고서 생성

취소

4 신고서 업로드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biocompany님 | 공지사항 | 내 정보 관리 | 로그아웃

최근신고

수입허가관리

보유신고관리

제조신고관리

폐기(양도)신고관리

정기(수시)검사

자가점검

인도(인수)신고 - 바이오기업 바이오기업

신고서 작성

신고서 업로드

접수대기

검토중

신고 완료

• 직인 날인한 인도(인수)신고서 업로드

Step 01

인도(인수)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①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신고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후 직인 날인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Step 02

직인 날인 인도(인수)신고서 업로드

②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바이오기업_인도(인수)신고서.pdf

③ 접수요청

인도(인수)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이미지 파일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해 주세요.

- ① 신고서 생성 후 파일을 다운로드 후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스캔
- ②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
- ③ 접수요청 클릭

※ 수정이 필요한 한 경우에는 “신고서 업로드”의 하단에 수정 클릭

12. 인수신고

4.2 (오프라인) 산업통상부 방문접수

- 생물작용제등 인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에 방문접수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2.4.13>

[] 1종 화학물질

[V]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바이오기업		
	성명(대표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1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삼평동) 1층 바이오기업	전화번호 000 - 000 - 0000	
신고내용	[] 인도 [V] 인수		
	물질 명칭 보툴리눔균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품목분류번호(HSK No.) 3002.49.2000		
	수출입 대상국 미국	수출입 대상자 ABC Company	
	수량 10 vial(1.5ml/vial)	인도·인수 장소 인천국제공항	
	인도·인수일 0000 년 00 월 00 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수출입허가증 사본 1부		없음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 신고인만 적습니다.

4.3 첨부서류

※ 인수신고서의 첨부서류	
수입허가증	•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 ▶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정식 서식일 것 • 수입허가 간주규정에 따른 수입허가증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급한 '수입허가증명서' ▶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급한 '수입허가증명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발급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 ※ 간주 규정은 본 안내서의 "9. 수입허가"를 참조
선하증권 (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입물품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통 요건) • 인수신고서의 물질명·수량·수입국가 등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인수일은 허가된 수입기간 이내여야 함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수입물품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AWB) ▶ 운반업체 송장 또는 운송확인서

4.4 제출전 (자가) 점검표

● 기본 정보·적용 대상 확인

☐	• 이번 건이 '생물작용제등 인수신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	• 인수하고자 하는 생물작용제등이 수입허가를 받은 물질인지를 확인했다.
☐	• 국내 공항, 항만에 물품 도착 예상일을 확인했다.
☐	• 생물작용제등 '인수 전(관세청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인수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 ※ 관세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당일 제외

12. 인수신고

● 서식 작성 사항(필수 기재)

☐	• 신청인(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의 기본정보를 정확히 기재했다.
☐	• 신고내용에서 '인수'에 해당함을 표기하였다.
☐	• '물질 명칭'과 '품목분류번호(HSK No.)'을 명확히 기재했다.
☐	• '수입 대상국'과 '수입 대상자'를 명확히 기재했다.
☐	• '수량'에 단위를 명확히 적었는가? (예: mg, mL, vial 등)
☐	• '인수장소'(공항, 항만)를 명확히 기재했다.
☐	• 서명/직인, 제출일자, 연도 누락이 없는가?

● 첨부서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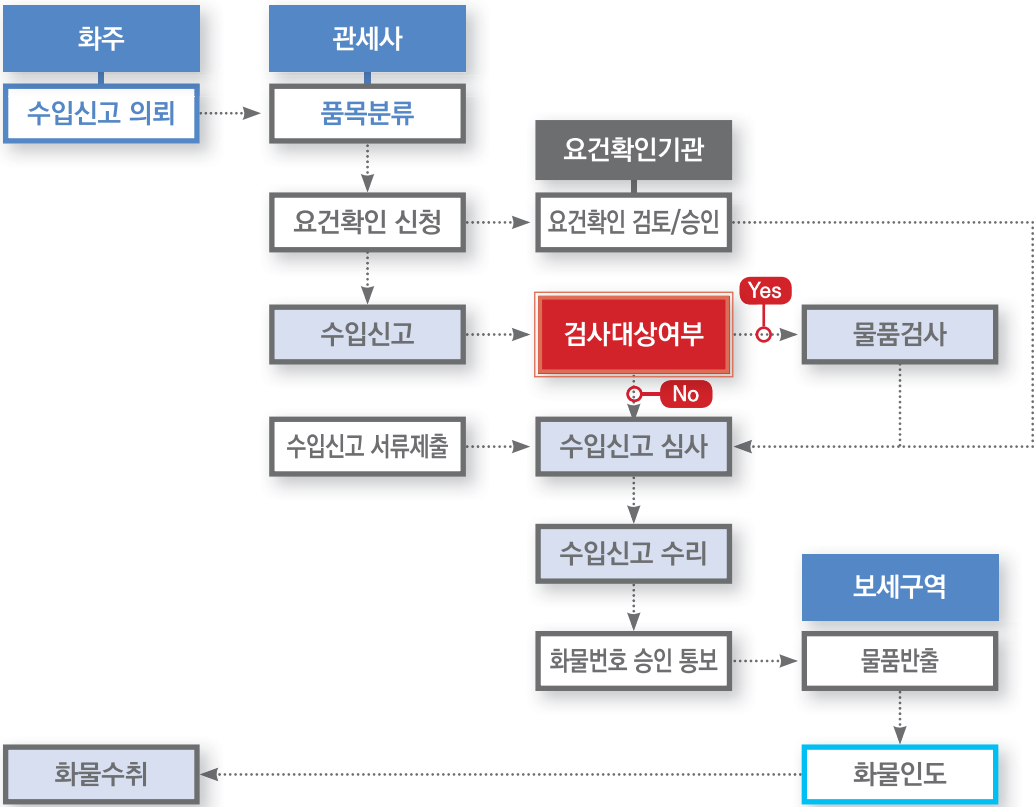
☐	- 수입허가증'을 첨부했다. ▶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 ▶ 수입허가 간주규정에 따른 수입허가증 - 「가족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급한 '수입허가증명서' -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급한 '수입허가증명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발급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 ※ 간주 규정은 본 안내서의 "9. 수입허가"를 참조
☐	•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입물품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했다.
☐	• 첨부서류와 인수신고서의 물질명·수량·수입국가 등과 일치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	• 첨부서류의 인수일이 허가된 수입기간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	• 제출 형식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인적사항(성명·번호·주소)의 일치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4.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입허가를 타 부처(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에서 받았는데 산업통상부에 “인수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예. 타 부처(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허가는 수입허가 간주이므로 인수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인수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인수하려는 경우, ‘ 인수 전(관세청 “수입신고 수리” 이전) ’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관세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당일 제외
Q3	수입허가서 발급 전 인수신고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Q4	인수신고 후 인수 일정 변경 이 생기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산업통상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존 인수신고를 철회하는 공문을 발송 후 다시 인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물질 일부만 먼저 인수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부분 인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각 인수때마다 인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수입허가서와 배송서류(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입물품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수량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입허가받은 양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변경)허가 위반 이 됩니다. 수입허가받은 양보다 적은 경우, ▶ 인수신고시 차후 인수계획이 없고 이번 신고로 종결된다는 내용 기재 필요 ▶ 허가받은 양대로 수입하나 기간을 두고 수입함으로써 인수신고를 여러차례해야할 때는 차후 인수계획 등에 대한 첨부문서 필요
Q7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직접 수입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시약벤더에 의뢰해 수입하여 구매 하려고 합니다. 인수신고는 누가 이행 해야 하나요?
A	수입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시약벤더 가 수입허가 절차(수입허가신청, 인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12. 인수신고

Q8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국내 시약벤더를 통해 해외로부터 들여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시약벤더가 수입허가 절차(수입허가신청, 인수신고)를 이행하면, 보유자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A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시약벤더로부터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후, 보유자는 보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독소는 보유신고 면제수량 미만을 보유할 경우, 보유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통관 절차도]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

05 | 유의사항(법 위반 시 제재)

「생화학무기법」 제12조제2항 ‘인수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될 처벌 규정

5.1. 위반 사례

● 사전 인수신고 위반(법 제12조)

미신고	
사례	• 생물작용제등을 인수하고 사용·보관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 제12조제2항은 생물작용제등을 인수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인수 후 사후적으로 신고	
사례	• 생물작용제등을 인수 후 소급 신고
근거	법 제12조제2항은 생물작용제등을 인수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 간주 규정 오인으로 미신고(법 제12조)

타부처에 수입허가 받은 생물작용제를 산업통상부에 인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질병관리청 타부처 허가로 병원체를 수입(법 제12조제6항)하고, 산업통상부에 인수신고는 누락
근거	법 제12조제2항은 수입허가를 받은 자(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가 생물작용제등을 인수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 거짓 신고(법 제28조)

거짓 신고	
사례	• 물질 명칭·수량·수입국·인수일 등을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 ▶ 선하증권(B/L) 또는 운송장 정보와 실제 인수 정보가 불일치
근거	법 제28조제4호의 거짓신고에 해당

12. 인수신고

허가받지 않은 기관 또는 담당자가 인수하는 행위	
사례	- 수입허가를 받은 기관과 실제 인수기관이 다름 -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인수함
근거	법 제28조제4호의 거짓신고에 해당

5.2 처벌 규정

인수신고 누락	
행위	사전 인수신고 없이 생물작용제등을 인수
조항	법 제12조제2항
벌칙	법 제28조제4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신고 경우	
행위	'생물작용제등 인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조항	법 제12조제2항
벌칙	법 제28조제4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등)에 대한 책임	
조항	법 제29조
벌칙	- 사업(기관) 명의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임직원)와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벌금형 등 처벌될 수 있음. ※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는 예외

06 | 생물작용제등 인수신고 (자가) 점검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생물작용제등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

☐	• 생물작용제등 인수 전에 '수입허가'를 받고 '인수신고서'를 제출했다.
☐	• '인수신고서'의 물질 명칭·품목분류번호, 수량 등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한다.
☐	• 첨부서류의 인수 날짜가 허가된 수입기간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	• '인수신고' 신청 내용이 '수입허가증 사본'과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입물품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일치한다.
☐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 또는 누락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	• 생물작용제등 인수 후 보유신고를 위한 보유경위 증빙, 보유량 증감 가능성 증빙 등 서류를 준비했다.
☐	• 정기/수시 검사 대비 보안관리·장부 비치 등을 유지하고 있다.

07 | 「생화학무기법」 법령

「생화학무기법」

[법률 제21065]

제12조(수입규제)

-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인수신고

-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 ① 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와 제13조·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4.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 신고)

-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보유량

12. 인수신고

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 · 인수량 및 인도자 · 인수자명
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 국가별 수출입량
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2.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제7조(수입허가 신청)

-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발주서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조(수출입물품 인도 · 인수 신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허가증 사본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 ·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